

##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1.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「채용절차법」)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2. 기술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 다만,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
3.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후면에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홈페이지 Q&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리며, 경우에 따라 등기우편 요금은 청구자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
4. 기술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비전자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채용절차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. 다만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·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임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